

대형유통업체 납품대금  
지급실태조사 결과 보고

2004. 3

중 소 기 업 청  
(기업환경개선과)

## 1. 조사개요

### □ 조사목적

- 납품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여부를 파악하여 시정('97년부터 매년 1회 실시)

\* 법적근거

-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
-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

### □ 조사내용

- 납품대금지급실태(2003. 9월)
- 직매입, 특정매입 등 거래형태별 계약서 사용여부
- 반품, 납품단가인하, 매장위치 변경 등 불공정거래 행위여부

□ 조사기간 : '03. 12. 15 ~ '04. 2. 29

### □ 조사대상

-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: 40개사
  - 백화점 20개사(수도권 10개사, 지방 10개사)
  - 할인점 20개사
- \* 법인별로 1개점을 조사. 다만, 동일법인이 백화점과 할인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두 조사

□ 조사방법 : 서면조사

## 2. 조사결과

### □ 거래형태

- 대형유통업체의 대부분이 직영체제(93.5%)로 운영(임대 6.5%)
  - 백화점 88.3%, 할인점 96.8%
- 납품업자와의 거래방법은 백화점은 재고관리 부담이 적은 특정매입(76.1%), 할인점은 직매입(76.8%) 거래형태를 주로 활용하고, 하도급 거래(전체 1.7%)는 극히 미미함.

(단위 : %)

구 분	직 영				임 대	계
	하도급	직매입	특정매입	소계		
백화점	0.1	12.1	76.1	88.3	11.7	100
할인점	2.5	76.8	17.5	96.8	3.2	100
전 체	1.7	52.4	39.4	93.5	6.5	100

#### ※ 용어의 정의

- 직 매 입 : 납품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구입·판매하는 거래형태
- 하도급매입 : 납품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백화점 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을 구입·판매하는 거래형태
- 특정매입 :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조건부 거래형태
- 임 대 : 백화점의 매장을 업체에 임대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

## □ 납품대금 지급

- 대형유통업체의 납품대금의 현금 지급비중은 평균 81.6%이며 백화점이 88.7%로서 할인점 77.6%보다 높게 나타남
- 이는 백화점의 경우 특정매입 비율이 높아 대금지급이 납품시점이 아닌 판매 후에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

### <현금 및 어음 지급비중>

(단위 :%)

현 금			어 음		
백화점	할인점	평 균	백화점	할인점	평 균
88.7	77.6	81.6	11.3	22.4	18.4

- 납품대금 지급시기는 직매입, 특정매입, 하도급거래시 각각 97.9%, 99.9%, 100%가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
### <납품대금 지급시기>

(단위 : %)

구 분		30일이내	31~60일	61~90일	91일이상	계
백화점	직 매 입	82.9	10.5	5.5	1.1	100
	하도급매입	28.7	71.3	-		100
	특 정 매 입	75.9	24.0	0.1		100
할인점	직 매 입	61.5	36.8	1.7		100
	하도급매입	71.8	28.2	-		100
	특 정 매 입	67.7	32.1	0.2		100
평 균		67.9	30.9	1.2		100

- 어음결제기간은 결제금액의 94.3%가 60일 이내에 지급
  - 결제기간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업체도 9개업체로 조사됨
    - 백화점 : 애경, 그랜드, 롯데, 세이, 신세계
    - 할인점 : 탐마트, 까르푸, 아람마트, 빅마트

<어음결제기간>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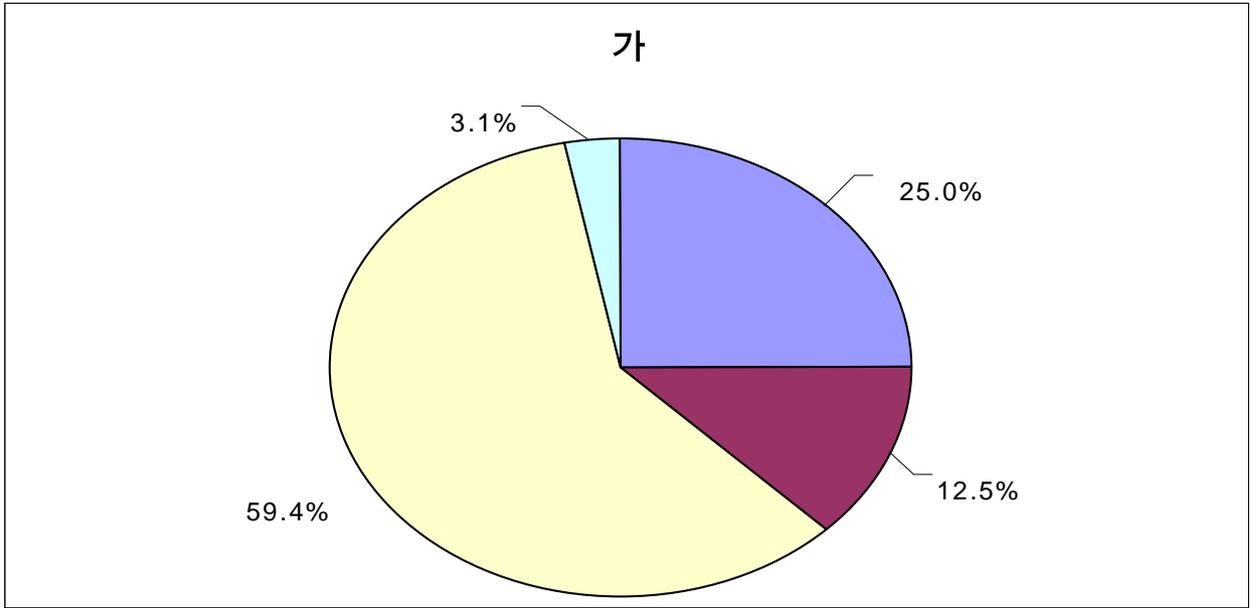
구 분		30일 이내	31~60일	61~90일	91일 이상	계
백화점	직 매 입	22.7	37.2	33.2	6.9	100
	하도급매입	22.7	77.3	-	-	100
	특 정 매 입	98.3	1.3	0.4	-	100
할인점	직 매 입	2.8	91.8	5.4	-	100
	하도급매입	-	100.0	-	-	100
	특 정 매 입	0.2	98.9	1.0	-	100
평 균		20.0	74.3	5.4	0.3	100

□ 거래 관련 설문조사

- 계약서식 사용
  - 납품중소기업과 거래계약시 사용하는 서식은 65.8%가 백화점협회 제정서식 수정 및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자체서식(20.0%), 백화점협회 제정서식(13.2%)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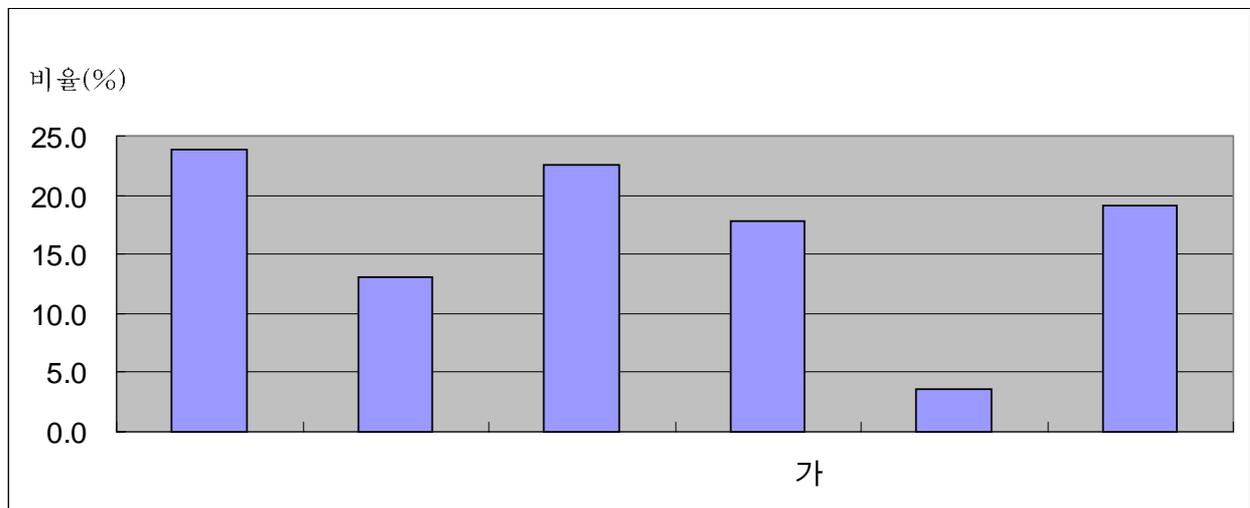
○ 상품 판매가격의 결정방법

- 거래당사자간의 협의(59.4%), 입점업체 결정(25.0%), 백화점 단독 결정(12.5%), 기타(3.1%) 순으로 조사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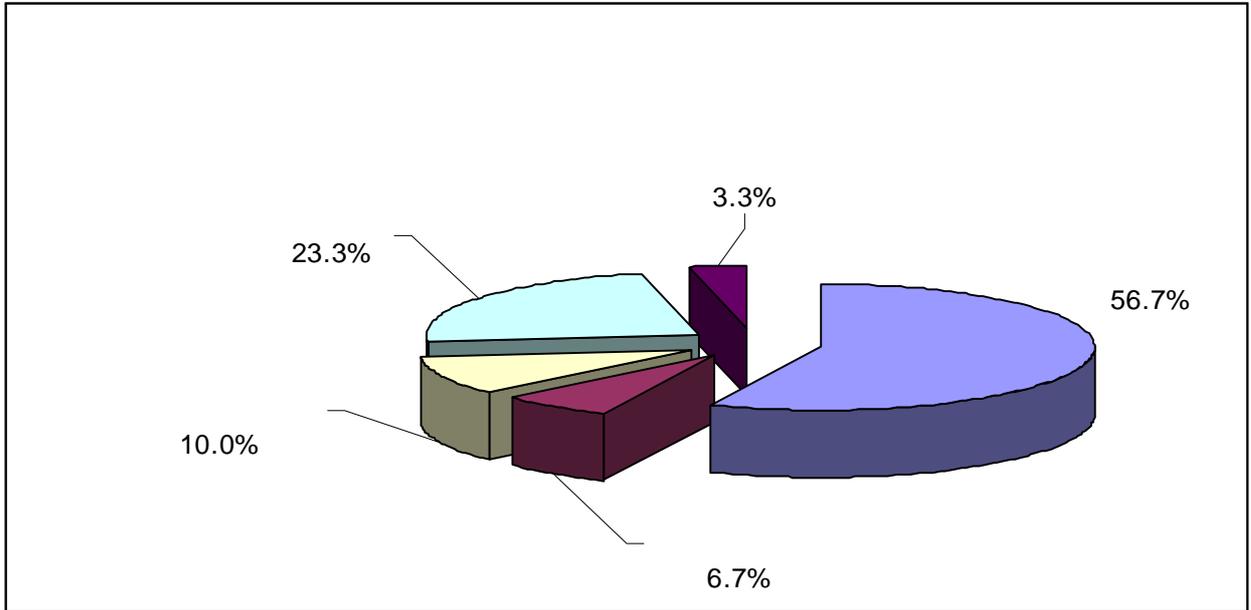
○ 판매수수료를 결정

- 판매수수료를 결정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상품종류 및 품질(23.8%), 브랜드인지도(22.6%), 매출실적(19.0%), 생산원가 (17.9%), 백화점 수수료율(13.1%), 최저마진율(3.6%) 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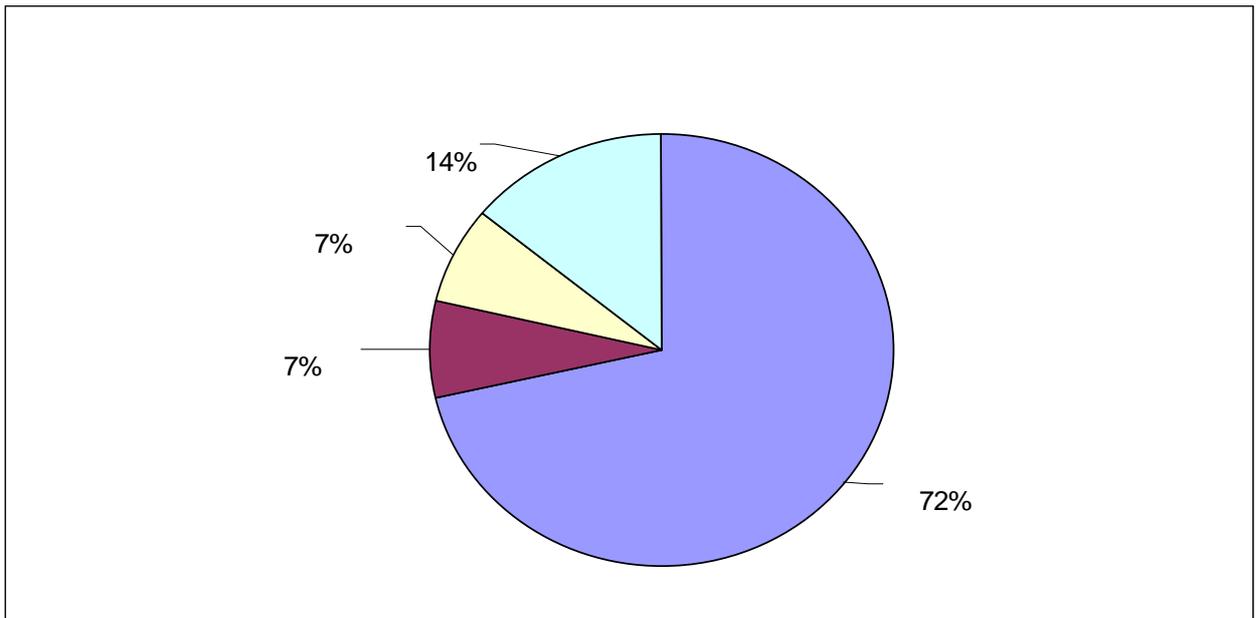


○ 매입상품 반품사유

- 반품 주요요인은 상품하자(56.7%), 반품 없음(23.3%) 판매부진 및 재고누적(10.0%), 변질 또는 유통기간경과 (6.7%), 기타(3.3%)순임



- 입점업체의 매장위치 변경 요구는 있다(39.3%), 없다(60.8%)로 조사 되었으며, 변경요구 이유는 판매부진(71.5%), 기타(14.3%), 제품하자 및 타 상품교체(14.2%) 순으로 나타남



- 특정매입상품의 도난 또는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92.6%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, 보험료는 93.3%가 백화점측에서 부담한 반면 6.7%는 입점업체에서 부담
- 조사대상업체의 72.4%가 판매수수료 외에 판매장려금(매출액의 평균 2~5%)을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됨

### 3. 조치계획

- 동 조사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조사대상업체 및 백화점협회에 통보
- 납품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및 납품애로 실태조사를 실시('04. 7월)하여 개선방안 마련
- 조사자료 미제출 업체에 미제출사유 제출요구
  - 백화점(4개사) : 뉴코아, 리베라, 화니, 코아백화점
  - 대형할인점(6개사) : 그랜드마트, 하나로클럽, 김스클럽, 월마트, 코스트코홀세일, 세화마트 등